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문진석 · 안태준 · 최혁진
이재관 · 이정문 · 정준호
복기왕 · 박정현 · 맹성규
박수현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복합자재·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건축자재의 통합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에 관한 사항
2. 제52조의5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및 제조·유통·시공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2조의7(건축자재의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1.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에 관한 사항</u> <u>2. 제52조의5에 따른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및 제조·유통·시공에 관한 사항</u> <u>3. 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u>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
6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종합정보체
계의 구축·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은 대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의 구
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